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장 교 식*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유형문화재의 보호제도와 운용
II. 문화재보호관계의 행정조직과 재정	2.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운용
1. 문화청 및 문화재보호부의 내부조직	3. 민속문화재의 보호와 운용
2. 지방공공단체와 교육위원회	4. 기념물의 보호와 운용
III. 문화재보호의 체계제도와 운용	5.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운용
1. 문화재보호의 체계	6. 문화적경관의 보호제도와 운용
2. 문화재의 지정, 등록, 선택 및 선정	7. 전통적건조물군의 보호제도와 운용
3. 지정 등의 법률효과	8. 문화재보존기술의 보호와 문화재의 연구체계
4.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 지정제도	V. 결어
IV. 문화재의 보호제도와 운용현황	

I. 들어가는 말

일본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제도는 1950년에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문화재 관련법들이 정비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은 각종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제제도를 포함한 통일법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체제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7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최근 2004년 법개정을 통하여 영국의 ‘도시전원계획법’¹⁾에 있어서 경관보존이나 프랑스의 ‘역사적 기념물법’에 의한 전망의 보호나 ‘천연기념물 및 역사적, 학술적,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1) 이후 1990년 계획(지정건조물 및 보전지구)법으로 개정되었다.

전설적 또는 회화적인 경관의 보호를 위한 1930년 5월 2일의 법률'에 있어서 보호경관의 제도는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호지역이나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제도로써 문화재경관의 보호제도가 성립했다.²⁾

일본은 이외에도 민속기술을 그 보호 대상으로 확충하는 등 일본의 사회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국민생활 및 의식의 변화에 따른 법개정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최근의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재 보호관계의 행정조직과 문화재보호법의 체계에 알아보 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문화재보호행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조직과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의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재보호 대상에 대한 각종 규제와 원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제 문화재보호의 운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지방 자치의 문화재보호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유형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매장문화재, 중요문화적경관, 전통적건조 물군, 문화재보존기술 및 문화재의 연구체제 순으로 그 법규정과 운용현 황 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법리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 문화보호법제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우리 문화재보호법제의 개정방향과 문화재 보호행 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中村賢二郎, 文化財保護制度の解説, ぎょうせい(2007), 1쪽.

II. 문화재보호관계의 행정조직과 재정

1. 문화청 및 문화재보호부의 내부조직

국가 문화재보호행정은 문부과학성의 외청인 문화청에 의해 일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³⁾ 그 임무, 소관사무 및 내부조직은 문부과학성설치법,⁴⁾ 문부과학성조직령,⁵⁾ 문부과학성조직규칙⁶⁾에 규정되어 있다.

문부과학성설치법 제3조는 “문부과학성은 교육의 진흥 및 생애학습과 추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의 육성,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과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중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규정에 따라 제4조 제87호에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문부과학성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는 문부과학성에 문화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청은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청에는 장관관방 이외에 문화부와 문화재부의 2부가 설치된다.⁷⁾ 문화재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 아이누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문화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문화시설 중 미술관(독립행정법인국립미술관이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역사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소관 한다.⁸⁾

3) 国家行政組織法(1948年 7月 10日法律 120号) 제3조 및 별표 1,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6조 및 제27조 참조.

4) 文部科学省設置法(1999年 7月 16日 法律第 96号)

5) 文部科学省組織令(2000年 6月 7日 政令第 251号)

6) 文部科学省組織規則(2001年 1月 6日 文部科学省令第 1号)

7) 문부과학성조직령 제94조 참조.

문화재부에는 부장과 문화재감사관 각 1명과 전통문화과, 미술학예과, 기념물과 및 참서관 1인을 둔다.⁹⁾ 참서관은 건조물인 유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 전통적 건조물군보존지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¹⁰⁾ 문화재청의 조직에 있어서 건조물인 유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부의 참서관이 담당하고 있다.

2. 지방공공단체와 교육위원회

2.1.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사무

2.1.1. 지방자치법

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은 보통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동향 제5호에서는 다른 영조물과 병렬적으로 박물관 그 밖의 문화에 관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문화에 관한 사무가 제시되고 있었다. 또 동향 제14호에서는 「건조물, 그림, 예능, 사적, 명승 그 밖의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예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행정사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예시 규정도 삭제했으나, 지역의 문화재의 보호에 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청장관의 권한 일부가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의 교

8) 문부과학성조직령 제97조 참조

9) 문부과학성조직령 제107조 참조

10) 문부과학성조직령 제111조 참조

육위원회에 위임되었으나, 이 기관위임제도가 폐지되면서, ① 매장물의 문화재여부를 감사하는 사무(문화재보호법 제102조), ② 중요문화재, 사적 등의 현상변경의 허가, 그 밖의 문화청장관의 권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매장지에서 공사 및 유적발견에 관한 문화청 장관의 권한이 도도부현 또는 시 교육위원회의 자치사무(매장문화재 관계 사무 및 중요문화재의 공개허가 사무 등) 혹은 법정수탁사무(그 밖의 사무)로 각각 이양되었다.

2.1.2. 교육위원회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보호행정은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80조의8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위원회는 (중략)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이를 집행한다.”고 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교육위원회의 사무임을 밝히고 있다.

2.1.3. 지방문화재보호심의회 및 문화재보호 지도위원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이러한 사항에 관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 건의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 지방문화재보호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문화재보호법 제190조).

또한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는 문화재보호지도위원을 둘 수 있게 되었는데, 문화재보호지도위원은 수시로 문화재를 순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계자에 대해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하며, 지역주민에 대해 문화재보호사상에 대해 보급활동 하는 임무를 지닌다(문화재보호법 제191조).

2.2. 민간에 의한 문화재보호활동

문화재보호법 제4조는 일반국민과 문화재소유자 및 정부·지방공공

단체의 마음가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국민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성실히 협력해야 하고,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계자는 문화재가 귀중한 국민적 재산임을 자각하여, 이를 공공을 위해 소중히 보전하며 가능한 한 이를 공개하는 등 그 문화적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방공공 단체는 문화재보호법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자의 소유권 그 밖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전국적으로 「문화재보호강조주간」(11월1일~7일)에 각종 행사를 하고, 「문화재화재예방의 날」(1월 26일)¹¹⁾에 문화재소방훈련을 실시한다.

Ⅲ. 문화재보호의 체계제도와 운용

1. 문화재보호의 체계

일본에서 문화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 문화적 향수의 대상이 되는 사물은 시대적, 공간적, 목적적인 조건하에 한정된 범위에서

11) 문화재화재예방의 날은 1949년 1월 26일에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목조건조물인 법륭사의 금당이 불타면서, 벽화가 손상된 사건을 계기로 한다. 이 사건은 일본국민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고 화재 등 재해에 의한 문화재보호의 위기를 깊이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져서, 다음해인 1950년에 문화재보호의 총괄적 법률로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54년 11월 3일에 법륭사 금당의 수리사업이 준공되고, 문화재보호행정도 확립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사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보급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법륭사 금당이 손상된 날이라는 점, 1·2월이 년중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1955년에 당시 문화재보호위원회(현재 문화청)와 국가소방본부(현재의 소방청)이 1월 26일을 문화재화재예방의 날로 정했다. 이후 매년 이 날을 중심으로 각 도도부현교육위원회, 각 소방서, 문화재소유자 등의 협력을 얻어 문화청과 소방청이 연계·협력하여 전국 각지에서 화재예방훈련 등의 문화재화재예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재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화재보호법의 체계하에서 문화재의 대상이 관하여 각종의 규제나 원조를 행하는 것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정의하고, 이런 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국가가 지정·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보존과 활용이 특히 중요한 것을 등록하여 보호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 외에도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문화청장관이 선택하고, 기록작성에 노력한다. 그 밖에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매장문화재), 문화재의 보존·수복을 위해 불가결한 전통적 기술·기능(문화재보존기술)도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문화재의 지정, 등록, 선택 및 선정

2.1. 문화재의 지정

문부과학대신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로(법 제27조 제1항),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법 제71조 제1항), 유형의 민속문화재 중 특히 중요한 것을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무형의 민속문화재 중 특히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제78조 제1항),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법 제109조 제1항) 각각 지정할 수 있다.¹²⁾

12) 문화재보호법에 기한 문화재의 지정·등록·선택·선정에 관한 기준은 동법시행시의 소관행정기관이었던 문화재보호위원회 및 1968년 6월 15일 공포 시행된 ‘행정기관의 간소화를 위한 총리부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승계한 문부성의 고시와 문부과학성의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져 공시되어 있다. 중요무형문

또한, 중요문화재 중 세계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진귀한 국민의 보물에 대하여는 국보로(법 제27조 제2항),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 특히 중요한 것을 특별사적, 특별명승 또는 특별천연기념물에(법 제109조 제2항) 각각 지정할 수 있다.

2.2. 등록

문부과학대신은 중요문화재 이외의 유형문화재,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이외의 유형의 민속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이외의 기념물 중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법 제57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2.3. 선택

문화청 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 중 특히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법 제77조 제1항). 또한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의 민속문화재 중 특히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기록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법 제91조).

2.4. 문화재의 선정

시정촌은 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서는 도시계획에,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를 정할 수 있다(법 제143조 제1항, 제2항). 문부과학대신은 시정촌의 신청에 기해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국에 있어서 그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을 중요전

화재의 지정에 관한 기준에는 동시에 그 보지자 및 보지단체의 인정에 관한 기준이 또한 선정보존기술의 선정에 관한 기준에는 동시에 그 보지자 및 보존단체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통적건보물군 보존지구로서 선정할 수 있다(법 제144조 제1항).

문부과학대신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신청에 기하여 당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정하는 경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경관계획 구역 또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지구 내에 있는 문화적 경관으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비추어 당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 중 특히 중요한 것을 문화적 경관으로서 선정할 수 있다(법 제134조 제1항).

3. 지정 등의 법률효과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의 법률효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가장 강한 관여는 물론 문화재의 지정이다. 지방공공단체 역시 문화재의 지정에 가장 강한 관여를 할 수 있다. 선택은 기록보존을 위한 국의 관여이며, 지정과 비교하여 관여의 정도는 약하다. 등록은 지정에 준한 행위이지만, 국의 관여의 정도는 지정만큼 강하지 않다. 또한 선정은 국가가 지원을 행하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관여이다.¹³⁾

3.1. 지정의 법률 효과

국가 수준에서 중요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을 국가가 지정하여 그 관리, 보호, 공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의 규제를 가하여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지정이 되면 일정한 행위는 금지되고, 허가제로 되며 각종의 신고의무가 과하여지는 등 다양한 수인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는 형사벌과 행정벌로 담보되어 있다.

국가의 지정 이외의 문화재로서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것은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서 지정된다(법 제182조 제2항). 조

13) 中村賢二郎, 앞의 책, 10-12쪽 참조.

례로서 벌칙을 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정된 문화재가 중요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무과학대신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문부과학대신은 지정의 경우와 같이 해제하는 경우에도 문화심의회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가치를 상실한 경우로서는 재해에 의한 멸실·훼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⁴⁾

3.2. 등록의 법률효과

문화재의 등록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지정 외의 유형문화재, 유형민속문화재 및 기념물 중 보존활용을 위하여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 국가가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관리, 보호, 공개에 관하여 원만한 규제를 행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 등록에 의하여 약간의 신고의무가 지워지고 그 규제에 대하여는 행정별로 담보되어 진다.

3.3. 선택의 법률효과

국가 지정 이외의 유형문화재, 무형민속문화재 중 특히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국가 스스로 기록의 작성, 보존, 공개를 행한다. 또한 적당한 자에게 공개의 원조나 기록의 작성, 보존, 공개의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선택제도는 이 같은 한정된 목적 하에 있는 것으로 선택에 의하여 규제가 가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3.4. 선정의 법률효과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시정촌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중에서 특히 가치가 높은 것을 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로서 선정한다. 시정촌은 조례로서 보존을 위한 필요한 현상변경의 규제를 정함과

14) 文化財保護法研究會, 文化財保護法, ぎょうせい(2006), 19-20쪽 참조.

동시에 보존을 위한 조치를 정한다(법 제143조). 국가에 의하여 선정의 효과는 관리 등에 관한 보조의 근거를 부여한다(법 제146조). 뿐만 아니라 선정은 국가에 의한 보호를 위한 원조의 대상을 특정하는 행위이다.

문화재보존기술의 선정은 국으로서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전통적인 기술·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행위이다. 보지자의 성명변경 등에 관한 약간의 신고의무과 부과된다.

중요문화재경관의 선정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신고에 기하여 문화재 보호의 관점에서 국가의 조언이나 보조를 행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행위이다. 현상변경 등의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¹⁵⁾

4.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 지정제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국가에 의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지만, 문화재는 넓게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방대하다. 또한 그 성질상 항시적으로 주의를 갖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전국 각지의 문화재 전부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문화재는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고 그 보존 및 활용을 기하는 것은 지방문화의 진흥·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하기에 문화재보호행정에는 지방공공단체가 맡는 역할을 크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규정하여 두고, 지방공공단체는 문화재의 관리, 수리, 복구, 공개 기타 그 보존 및 활용을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것에 의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로서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하여 보존 및 활용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5) 中村賢二郎, 앞의 책, 11-12쪽 참조.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문화재보호행정의 체제에 대하여도 정비하여가면서 향후에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일체가 된 총합적인 문화재 보호행정을 추진하여 가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¹⁶⁾

IV. 문화재의 보호제도와 운용현황

1. 유형문화재의 보호제도와 운용

1.1. 미술공예품의 보존과 활용

1.1.1. 미술공예품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조는 문화재의 정의에 대하여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전적, 고문서,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국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고고자료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를 들고 있다. 여기서 일괄하여 유형문화재라 하는 것 중 건조물 이외의 것을 통상 미술공예품이라고 총칭한다.

이러한 미술공예품에 대한 국가에 의한 지정은 중요문화재 및 국보로서 지정된다.¹⁷⁾ 2007년 7월을 기준으로 중요문화재 10,283건, 국보 861건이 지정되어 있다.

1.1.2. 미술공예품의 관리와 보호

국보 및 지정문화재의 관리는 그 소유자가 스스로 소유권에 기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문화재가 국가의 지정을 받게

16) 文化財保護法研究會, 앞의 책, 21-23쪽 참조.

17) 유형문화재의 지정을 위한 조사검토는 ‘국보 및 중요문화재지정기준(1951년 문화재 보호위원회 고시 제2호. 문화청 고시로서 효력을 갖는다)에 기하여 행하여진다. 기준은 회화, 조각부, 공예품부 등의 각 부문별로 지정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되면 그 가치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국가는 국가 지정의 문화재의 공공적, 공익적 성질에 비추어 그 적절한 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소유자의 관리권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거나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혹은 각종의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30조는 문화청 장관에게 중요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관리방법의 지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에서는 중요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에 기한 문부성령 및 문화청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요문화재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과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2조에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경 및 성명, 명칭, 주소의 변경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33조에서는 중요문화재의 멸실, 훼손, 망실, 도난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¹⁸⁾ 동법 제34조에는 소재장소의 변경에 대하여 20일전의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 기타 관리에 관한 각종의 신고의무 등의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로서 과료가 부과된다.

1.1.3. 미술공예품의 조사와 공개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조사에 대하여 제54조에서 ‘문화청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요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중요문화재의 현상 또는 관리, 수리 혹은 환경보전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55조에서는 보고에 의하여도 상황에 대한 확인을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청 장관에 의한 실시조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요문화재가 갖는 공익성에 비추어 소유자 등에게 수인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청 장관의 실시조사에 따른 손실에

18) 이러한 신고에 의하면 중요문화재의 소실사건은 문화재보호법 시행 후 1998년 3월 말을 기준으로 9건이 발생하였고 도난사건으로 소재불명된 것이 37건이다.

대하여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규정을 두어 재산권과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7조의2 제1항은 ‘중요문화재의 공개는 소유자가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자에 의한 공개원칙을 취하고 있다. 동항 단서에서는 ‘관리단체인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공개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단체의 지정에 의하여 공개의 권한도 관리단체로 이양되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관리단체가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건조물의 보존과 활용

1.2.1. 건조물의 지정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국보중요문화재에 지정되어 있는 건조물은 2,306건(이중 국보213건), 4,147동(이중 국보 257동)이다. 건조물의 지정 기준은 ‘국보 및 중요문화재지정기준’의 ‘건조물의 부’에서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중요문화재는 건조물, 토목구조물 및 기타 공작물 중 ① 의장적으로 우수한 것, ②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 ③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 ④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 ⑤ 파생적 또는 지방적 색채가 현저한 것의 각호에 해당하고 또한 각 시대 또는 유형의 전형이 되는 것이다.

이 기준에 토목구조물이 추가된 것은 문화청에 설치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에서 2005년 10월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의 보고를 받아 이루어진 2006년의 지정기준 개정이다. 이처럼 기준은 대강을 정하고, 실제의 지정방침은 문화청 내부의 검토에 기한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의 전문조사회의 조사심의회에 의해 형성된다.

1.2.2. 건조물의 관리와 보호

중요문화재, 국보인 건조물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도는 미술 공예품과 동일하다.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2는 ‘중요문화재의 수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31조에서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그 관리권의 일부로서 수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동조 단서는 ‘관리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소유자의 관리권은 제약되어 일상적인 관리권이 관리단체에 귀속하는 것에 대응한 규정이다.

동법 제35조 제1항은 ‘관리 또는 수리에 있어 다액의 경비를 필요로 하고, 중요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문화청 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관리 또는 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제3항).¹⁹⁾

국가 지정문화재 건조물의 대부분은 목조건물이며 화재에 의한 방지 대책이 수리와 함께 보호대책의 주를 이룬다. 방재설비로서는 자동화재 방지설비, 소화설비, 피뢰설비가 있고, 이 3가지 설비를 갖춘 방재를 총합설비라고 부른다. 일본의 방재는 부분방재 보다는 총합방재에 무게가 실린다. 총합방재는 1989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실시된 동대사 총합방재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특히 대규모적인 방재사업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것은 특수방재라고 부르며, 1978년부터 1985년까지 8년간 사업이 계속 실시되었던 범룡사, 1961년부터 9년간 계속된 연력사 사업 등이 특수방재이다.

1.2.3. 공개 활용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민가 등의 건물로서 공유화된 것을 박물관, 자료관 등으로서 공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전통적건조물군

19) 본조의 규정은 보조의 근거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지정문화재 건조물에 관하여는 국유문화재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보존지구 중 중핵적인 건물을 이러한 형으로 공개하는 것이 그 예이다.

현지보존이 곤란하고 이축이 필요한 문화재 건조물을 지방공공단체, 법인 등이 수집하여 민속원 등으로서 공개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국보 중요문화재 중 특히 우수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문화청에서 1960년 이래 매년 축소모형을 제작하였다. 또한 건조물의 채색의 복원작업도 계속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주로 전시공개하고 있지만, 일부는 교토의 국립박물관, 도쿄의 국립과학박물관에서도 전시하고 있다.

1.3. 등록유형문화재

1.3.1. 등록제도의 신설

1992년 4월에 문화재보호심의회에 설치된 문화재보호기획특별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새로운 요청에 대응하여 문화재보호에 관한 심의의 결과로 1994년 7월에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문화재보호 시책의 개선 충실에 대하여’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문화재보호조치의 확대, 근대 문화유산의 보호, 문화재보호수법의 다양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9월 문화청에 ‘근대의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가 설치되고, 1996년 7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도 국의 지정기준의 개선과 근대 문화유산의 지정의 촉진 및 등록제도 등을 다양화한 수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등이 제언되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 국의 지정기준의 개정이 행하여지고, 이후 건조물을 대상으로 하여 1996년 6월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도화되고 동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등록제도는 지정에 위한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보호대상의 등록과 등록물건에 관한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원만한 형태의 보호제도를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57조 제1항은 문부과학대신이 중요문화재 이외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로 되는 것을 문화재 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부과학대신은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등록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동조 제2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유형문화재에 관한 등록절차 및 신고서 등에 관한 규칙’(1996년 문부성령 제29호)에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1.3.2.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

1990년도에 동경도가 동경도심의 5개구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건축학회편 ‘일본건축총람(1980년)’의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1,060건 중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은 417건, 소실이 확인된 것은 539건, 불명 60건으로 10년간의 소실율은 53%를 상회하였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1996년에 건조물에 대하여 등록문화재의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법이 10월 1일에 시행되었고, 동년 11월 15일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의한 최초의 등록물건에 대하여 답신을 얻어 등록되었다. 이때의 등록건수는 118건이었다. 이후 15회의 등록을 행한 등록건수는 1045건에 이르렀으며,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6064건이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등록유형문화재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²⁰⁾

건조물, 토목구조물 및 기타 공작물(중요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 등록유형문화재등록기준(2007년 문부과학성고시 제44호) 참조.

중 원칙적으로 건설 후 50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것

- ① 국토의 역사적 가치에 기여하는 것
- ② 조형의 규범을 이루는 것
- ③ 재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것

1.3.3. 건조물 이외의 등록유형문화재

2004년 법개정에 의하여 건조물 이외의 유형문화재에 등록제도가 확대되었다. 2005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44호에 의하여 건조물 이외의 유형문화재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조물 이외의 유형문화재(중요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원칙적으로 제작 후 50년을 경과한 것으로 역사적 혹은 계통적으로 보존할 것 또는 계통적 혹은 망라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것

- ① 문화사적 의의가 있는 것
- ②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③ 역사상의 의의가 있는 것

2006년 3월에 문화심의회는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자문이 있었던 미술공예품 4건의 등록에 대하여 답신을 행하였고 이에 따라 건조물 이외로서 처음으로 등록문화재가 되었다. 공예품에는 유전자기 1만 311점, 고고자료는 9524점, 역사자료는 8305점이 등록되었다.

2.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운용

2.1. 제도의 정비

문화재보호법 제정 전에는 유형문화재에 관하여는 국보보존법과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기념물에 관하여는 사적명승 천연기념물보존법이 있어 각각의 법률에 기한 보호제도가 성립하였지

만, 무형문화재에 관하여는 이러한 법률제도에 따른 보호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법제도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법제도는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쇠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조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었다. 1954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가치의 관점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를 채용하여 도합 그 ‘기예’를 구현하는 소지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단순히 쇠망할 우려가 있는 전통적인 ‘기예’에 한하지 않고 가치가 높은 전통적인 ‘기예’를 넓게 보호하는 제도가 되었지만, 중요무형문화재의 소지자가 자연인에 한정되었기에, 그 ‘기예’에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고 소지자로 해야 할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표자를 소지자로 하여 인정하는 편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75년 법개정에 의하여 자연인 이외에도 ‘기예’를 소지하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소지단체로 하여 인정하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2.2. 지정 및 인정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1항은 ‘문부과학대신은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란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에서 일본국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다.’²¹⁾ 지정된 것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기예’이다.²²⁾

2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22) ‘중요문화재의 지정과 함께 소지자 및 소지단체의 인정기준’(1954년 문화재보호위원회 고시 제55호. 1975년 문부성 고시 제154호에 의해 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능관계>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2항은 ‘문부과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소지자 또는 소지단체(무형문화재를 소지하는 자가 주된 구성원으로 된 단체에서 대표자가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의 대상은 무형의 ‘기예’이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가능한 구체적인 존재에 의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정과 동시에 그 ‘기예’를 체현하고 있는 소지자를 인정하거나, 또는 ‘기예’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고 그 ‘기예’의 소지가 단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소지단체를 인정하는 것을 지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²³⁾

1. 음악, 무용, 연극 기타 예능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 ① 예술상 특히 가치가 높은 것
- ② 예술사상 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
- ③ 예술상 가치가 높고, 또는 예술사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나아가 지방적 또는 유파적 특색이 현저한 것

2. 전항의 예능의 성립,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으로 특히 우수한 것

<도예, 염직, 자예, 금공 기타 공예기술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 ① 예술상 특히 가치가 높은 것
- ② 공예사상 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
- ③ 예술상 가치가 높고, 또는 예술사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나아가 지방적 특색이 현저한 것

23) ‘중요문화재의 지정과 함께 소지자 및 소지단체의 인정기준’(1954년 문화재보호위원회 고시 제55호. 1975년 문부성 고시 제154호에 의해 개정)에 따른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능관계>

* 소지자

- 1.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예능 또는 예능의 기법(이하 단순히 ‘예능 또는 기법’이라 한다)을 고도로 체현할 수 있는 자
- 2. 예능 또는 기법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나아가 이를 정통하고 있는 자
- 3. 2인 이상의 자가 일체를 이루어 예능 또는 기법을 고도로 체현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가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

* 소지단체

예능 또는 기법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고 나아가, 당해 예능 또는 기법을 소지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자가 주된 구성원이 되어 있는 단체

소지자의 인정은 지정된 ‘기예’를 소지하는 자 중에 가장 우수한 기예를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지만, 동일의 기술 중에 특색이 다른 기예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은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소지자 또는 소지단체로서 인정하는 것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²⁴⁾ 또한 문부과학대신은 지정을 한 후에 있어서도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소지자 또는 소지단체로서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소지자 또는 소지단체로서 추가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²⁵⁾

2.3. 전승자의 양성 및 공개

2.3.1. 전승자 양성사업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기예이고 현존하는 기예를 승계하는 것에 의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54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소지자, 지방공공단체 기타 보존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다(1975년 법 개정에 있어서는 소지단체를 추가하였다).

<공예기술관계>

* 소지자

1.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공예기술을 고도로 체득하고 있는 자
2. 공예기술을 정확하게 체득하고 나아가 이를 정통하고 있는 자
3. 2인 이상의 자가 공통의 특색을 갖는 공예기술을 고도로 체득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자가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

* 소지단체

공예예술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희박하고 나아가, 당해공예기술을 소지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 이러한 자가 주된 구성원이 되어 있는 단체

24)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3항.

25)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4항 참조.

이에 따라 소지자에 대하여 전승자의 양성과 자신의 기예의 유지향상을 위한 특별조성금이 지급되고 있다.²⁶⁾ 이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승자 양성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2.3.2. 공개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은 ‘문화청 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소지자 또는 소지단체에 대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를,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기록의 공개를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소지자 또는 소지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의 소유자가 그 기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공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조에 대하여는 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제77조 제1항 후단은 국가지정 이외의 무형문화재에 대하여도 ‘공개 또는 그 기록의 작성, 보존 또는 공개에 요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기록의 작성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1항 전단은 ‘문화청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하여도 스스로 기록의 작성, 전승자의 양성 기타 그 보존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청에서는 기록화면을 제작하였고, 2006년까지 각 분야에 걸쳐 34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26) 2007년 기준으로 특별조성금은 1인당 년 200만 엔으로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77조 제1항 전단은 ‘문화청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 중 특히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스스로 그 기록을 작성, 보존 또는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예능이나 공예기능의 변천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 공개하고 있다.

3. 민속문화재의 보호와 운용

3.1. 법제의 경위

195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시에는 민속자료가 유형문화재의 일종이었다. 따라서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은 중요문화재로서 지정되었다. 1954년 법 개정예에 의하여 민속자료를 유형문화재와 병렬의 문화재 유형으로서 독립시켜 제2조 정의에서 그 내용을 예시하여 명시하였다. 동시에 유형의 민속자료에 대하여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중요문화재에 준하는 보호제도를 설치하였으나 현상변경 및 수출 그리고 제3자에 의한 공개는 허가제를 취하지 않고 사전 신고제로 하였다.

1975년 법 개정예에 의하여 민속자료의 명칭을 민속문화재로 변경하고, 민속예능도 여기에 포함시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유형의 민속문화재에 대하여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서의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구법에 의한 중요민속자료는 신법에 의한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대하여도 새로운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그 보호조치가 강구된다.

2004년 법개정에 의하여 제2조의 민속문화재의 정의에 풍속관습 및 민속예능과 민속기술이 새로이 추가되었다.²⁷⁾

27)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및 이에

3.2. 지정 및 기록 작성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제1항은 ‘문부과학대신은 유형의 민속문화재 중 특히 중요한 것을 중요유형민속문화재로, 무형의 민속문화재 중 특히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에서 중요문화재를 지정할 때의 고시, 통지 및 지정서의 교부 규정이 준용되고, 또한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서 관보에 고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⁸⁾

법 제87조는 ‘문화청 장관은 중요민속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하여 스스로 기록을 작성 기타 그 보존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 그 보존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1조에서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대하여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형문화재와 같이 기록 작성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동시에 경비의 보조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무형의 민속문화재의 선택기준’(1954년 문화재보호위원회 고시 제59호, 1975년 문화청 고시 제17호에 의해 개정)은 무형의 지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추가하여 ‘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것’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에 기하여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제도로는 곤란한 혼례, 장례식 등의 의례나 전통적인 습속 등으로 현존생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 물건으로 국민생활의 추이의 이해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28) 중요유형민속문화재지정기준(1954년 문화재보호위원회 고시 제58호, 1975년 문부성 고시 제155호에 의해 개정)은 각 분야마다 예시를 들어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것들을 선택하여 기록 작성 등을 행하고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3.3. 보존과 활용

유형민속문화재의 수납, 보관을 위한 수장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하여 문화청에서는 국가지정물건의 수장고 건설에 대한 조성 조치를 강구하여 2007년까지 97건을 상회하는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파손이나 썩, 염해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수리와 복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도 2007년까지 364건에 이르는 국가지정 물건의 수리가 국가의 보조 사업으로 행하여 졌다.

중요유형민속문화재의 보호에 대하여는 제83조에 따라 중요문화재에 관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수리원칙, 관리 또는 수리의 국고 보조, 관리에 관한 명령 또는 권고, 수리에 대한 권고와 이에 기한 수리비의 국고부담, 보조 등에 관계된 중요문화재양도의 경우에 납부금, 국가에 대한 매도의 신고, 국가에 의한 관리 또는 수리의 수탁 및 기술적 지도의 제규정이 준용된다.

법 제87조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국가의 조치와 함께 보조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기하여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풍속관습, 민속예능에 관한 자료작성 및 주지에 관한 사업이나 주민이 참가하는 전통교실, 강습회의 사업,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전승자양성 사업, 국가지정 또는 선택기록작성의 무형민속문화재의 현지공개사업 등에 대한 조성을 행하였다.

3.4. 등록유형민속문화재

2004년 법개정으로 등록유형민속문화재의 제도가 창설되어 문부과학대신은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이외의 유형의 민속문화재(지방공공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의 민속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 중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²⁹⁾ 유형문화재의 등록과 마찬가지로 문부과학대신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문화재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그 타 문화재등록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등록유형민속문화재의 보호조치에 대하여도 등록유형문화재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상변경 또는 수출의 신고에 대하여는 등록유형민속문화재가 생활에 밀착한 기술자에 의해 수리가 빈번히 행하여지는 것에 비추어 등록유형문화재의 경우에는 30일 전의 신고기간을 20일 전까지 단축함과 동시에 문부과학성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의 신고를 불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³⁰⁾

2007년 3월 현재까지 6건의 유형민속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다.³¹⁾

4. 기념물의 보호와 운용

4.1.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109조 제1항은 ‘문부과학대신은 기념물 중 중요한

29)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1항.

30)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제3항 참조.

31) 등록유형민속문화재의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유형민속문화재 등록기준’(2005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45호)에서 국가지정물건 등을 제외한 유형의 민속문화재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① 형상, 제작기법, 용법 등에 있어서 일본 국민의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
- ② 유형의 민속문화재의 수집에 있어서 그 목적, 내용 등이 역사적 변천, 시대적 특색, 지역적 특색, 기술적 특색, 생활양식의 특색 또는 직능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
- ③ 일본국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관계된 유형의 민속문화재 또는 그 수집, 일본국민의 생활문화와 관련을 갖는 중요한 것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하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이라 총칭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 특히 중요한 것을 특별사적, 특별명승 또는 특별천연기념물(이하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이라 총칭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지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소유자 및 권원에 기한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있어서 긴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가지정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지정의 제도는 구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에 있었던 제도로, 구법에서 지정은 내무대신이 행하였지만, 지정 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장관이 가지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행법의 가지정에는 국가지정에 관한 제10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³³⁾

법 제111조 제1항에는 ‘문부과학대신 또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제109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을 행함에 있어서 특히 관계자의 소유권, 광업권 그 타의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함과 동시에 국토의 개발 그 타의 공익과의 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견의 청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³⁴⁾

32) 기념물의 지정기준은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사적명승천연기념물지정기준’(1951년 문화재보호위원회 고시 제2호)에 의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3) 문화재보호법 제110조 제3항.

34) 문화재보호법 제155조에서 제160조 참조.

4.2. 기념물의 지정제도의 특색

기념물은 많은 경우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서 지정되는 경우에도 광역의 토지가 지정대상이 되거나, 지정대상의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동물의 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도 동시에 그 생식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생식지가 극히 광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지정지역이 광범위하게 걸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권원에 기한 점유자가 다수로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권리관계의 이동이 많은 경우도 상정되는 외에 경제사회의 변동에 수반한 권리자의 거주지의 이동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모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상정하여 법 제109조 제4항은 공시에 의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부과학대신은 통지해야 할 상대방이 현저하게 많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촌의 사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게시장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의하여 소유자 및 권원에 기한 점유자의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를 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면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 제109조 제6항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지정에 관한 기념물을 자연환경 보호의 견지에서 가치가 높은 때에는 환경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념물 지정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호의 입장에서 환경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배려이다.

4.3. 등록기념물의 보호

4.3.1. 등록기념물의 보호제도

2004년 법개정에 의하여 건조물 이외의 유형문화재와 유형민속문화

재의 등록제도가 창설됨과 동시에 기념물에 대하여도 등록제도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대신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이외의 기념물(지방공공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지정을 행한 것은 제외한다) 중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로 되는 것을 문화재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³⁵⁾

문부과학대신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과 동시에 문화재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³⁶⁾ 등록은 관보로 고시함과 동시에 소유자 및 권원에 기한 점유자에게는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지해야 할 상대방이 다수로 개별적으로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지에 대신하여 소재지의 시정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게시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4.3.2. 등록기념물의 보호조치

등록기념물에 대하여는 등록의 말소, 현상변경의 신고, 현상 등의 보고에 대하여 등록유형문화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기념물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관리단체의 지정, 관리단체에 의한 표식, 설명판 등의 설치의무, 관리단체에 의한 복구 등에 대하여 국가지정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³⁷⁾

등록기념물의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유적, 명승지, 동물·식물·지질광물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고 있다.³⁸⁾ 실제로 문화심의회회의 자문답신을

35) 문화재보호법 제132조 제1항.

36) 문화재보호법 제132조 제2항.

37) 문화재보호법 제133조.

38) 등록기념물등록기준(2005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46호)은 유적, 명승지, 동물·식물·지질광물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유적관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관한 유적 기타 유적(사적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

거쳐 2007년 7월 말까지 14건의 기념물이 등록되었다.

5.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운용

5.1. 매장문화재와 법규제

매장문화재(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 중에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라 한다) 및 그 포장지의 발굴에 대하여는 법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청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1954년 법 개정에서 제4장(현재 제6장)으로 매장문화재의 1장을 마련하였다. 제92조에서 제108조까지의 조문 중 제93조

규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원칙적으로 근대까지의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 ① 일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상에서 중요한 것
- ② 지역역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 ③ 역사상의 인물에 관한 것

<명승지관계>

공원, 정원 기타 명승지(명승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원칙적으로 인문적인 것으로 조성 후 50년을 경과한 것 또는 자연적인 것으로 넓게 알려진 것,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 ① 조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 ② 시대를 특징지우는 조형을 잘 보존한 것
- ③ 재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것

<동물, 식물 및 지질광물관계>

동물, 식물 및 지질광물(천연기념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행한 것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 성립, 자연의 특징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 ① 일본국에 있어서 작출된 사양동물 및 사육지
- ② 일본국에 있어서 작출된 재배식물 및 생육지
- ③ 동물, 식물 및 암석, 광물 및 화석의 표본
- ④ 전3호에 기재된 것 이외에 지역독특의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

(토목공사 등을 위한 발굴에 관한 신고 및 지시)는 1954년의 개정으로 추가되고, 제94조(국의 기관 등이 행하는 발굴에 관한 특례)부터 제97조(국의 기관 등의 유적의 발굴에 관한 특례)까지는 1975년의 개정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개발의 진행과 매장문화재의 발굴에 관한 문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법 제92조 제1항은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그 조사를 위하여 토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문부과학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갖고 발굴에 착수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매장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신고에 관한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보고서의 제출을 지시하고, 또는 발굴의 금지, 정지 혹은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93조는 ‘토목공사 그 타 매장문화재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고분 그 타 매장문화재를 포장하는 토지로서 주지되는 토지(이하 ‘주지의 매장문화재포장지’라 한다)를 발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30일 전의 규정은 60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94조 제1항은 ‘국의 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설립에 관계된 법인으로 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목적으로 주지의 매장문화재포장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당해 국가의 기관 등은 당해발굴에 관한 사업계획의 책정에 당하여 미리 문화청장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주지의 매장문화재포장지에 대하여 자료의 정비 및 그 타 주지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주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과하고 있다.

5.2. 지방공공단체의 발굴 및 역할의 강화

법 제99조는 ‘지방공공단체는 문화청장관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을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장문화재를 포장한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발굴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75년 법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차지하는 역할의 증대에 입각하여 지방공공단체의 발굴조사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1999년 7월에 공포된 ‘지방분권의 추진을 꾀하기 위한 관계법률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87호) 및 2000년 2월에 공포된 ‘지방분권의 추진을 꾀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문부성관계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정령’(2000년 정령 제42호)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의 일부개정이 되어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발굴 및 유적발견에 관한 사무(제92조에서 제94조까지)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교육위원회가 각각 자치사무로서 행하는 것이 되었다(법 제184조 제1항 제6호 및 정령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즉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에 관하여는 신고의 수리, 지시 및 명령(법 제92조)은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행한다. 국의 기관 등 이외의 자가 행하는 토목공사 등을 위한 발굴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지시(제93조)는 도도부현(지정도시의 구역 내에 있어서 토지의 발굴에 대하여는 당해지정도시)의 교육위원회가 행한다.

또한, 국의 기관 등이 행하는 토목공사 등을 위한 발굴에 관한 통지의 수리, 협의를 구해야 할 뜻의 통지, 협의 및 권고(제94조)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행한다. 아울러 국의 기관 등 이외의 자에 의한 유적발견에 관한 신고의 수리, 명령, 의견청취, 기간의 연장 및 지시(제96조)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행한다. 그리고 국의 기관 등에 의한 유적발견

에 관한 통지의 수리, 협의를 구해야할 뜻의 통지, 협의 및 권고(제97조) 역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행하게 된다.

6. 문화적경관의 보호제도와 운용

6.1. 경관법의 성립

일본의 도시계획행정은 1919년에 시행된 도시계획법에서 미관지구·풍치지구가 정해지고, 1982년에 건설성에 의해 도시경관형성 모델사업이 창설되는 등, 도시의 경관형성을 위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개발중심의 흐름이었다. 이러한 중에 1975년에 지방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제도가 성립했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경관이 손상되고 촌락의 경관이 쇠퇴하는 중에 지방자치체가 조례에 의한 경관의 보호나 경관의 형성을 꾀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2003년 9월말을 기준으로 27의 도도부현과 450의 시정촌에서 500 이상의 경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례에 의해 177의 시정촌에서 경관형성의 기본방침이 정해지고, 162의 시정촌에서 경관형성지구나 중점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시책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서 2004년의 국토교통성이 주도한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경관법은 일본국의 도시, 농산어촌 등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 등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경관계획의 책정, 경관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규제, 경관정비기구에 의한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6.2. 문화적경관제도의 창설

국토교통성 등에서 경관법 제정의 준비가 진행되는 중에 문화청에서도 문화재보호법의 법체계에 대한 역사적인 경관을 보호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법개정으로 제2조의 문화재의 정의에 새로이 문화적경관이 추가되었고, 제2조 제1항 제5호에 ‘지역에 있어서 인간의 생활 또는 생업 및 당해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의 이해를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하 ‘문화적경관’이라 한다)’이 추가되었다. 또한 새로이 8장에 중요 문화적경관의 장이 신설되었다.

6.3. 중요문화적경관의 선정

문부과학대신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신청에 기하여 당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정하는 경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경관계획구역 또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관지구 내에 있는 문화적경관으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당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그 보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적경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³⁹⁾

이 선정에 대하여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에 관한 제109조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의 관보예의 고시, 통지, 통지를 대신한 게시,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⁴⁰⁾

그리고 2005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47호에 의하여 ‘중요문화적경관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⁴¹⁾ 이에 따라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9) 문화재보호법 제134조 제1항.

40) 문화재보호법 제134조 제2항.

41) 중요문화적경관 선정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에 있어서 인간의 생활 또는 생업 및 당해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다음에 예시된 경관지 중 우리 국민의 기반적인 생활 또는 생업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 또는

약 40여건에 달하는 문화적경관에 관한 조사나 중요문화적경관의 신청이 필요한 문화적경관 보존계획의 책정이 진행되고 있다.

7. 전통적건조물군의 보호제도와 운용

7.1. 문화재의 광역보존

1975년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가 창설된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대에 걸친 고도경제성장 중에 도시와 지방에 있어서 생활기반의 격변이 그 원인이었다. 주택지의 대규모 재개발이나 농산촌에서 주민들의 이촌현상이 진행되면서 일본인의 전통적 주거환경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존운동이 대두되고 전국각지에서 보존조례가 제정되면서 문화재보호제도로써 전통적 건조물군이 새로운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7.2. 전통적건조물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제6호에서 전통적건조물군의 정의에 대하여 ‘주위의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는 건조물군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하 ‘전통적건조물군’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독특한 것

- ① 논농사·밭농사 등의 농경에 관한 경관지
 - ② 모야·목야 등의 벌초·방목에 관한 경관지
 - ③ 용재림·방재림 등의 임야의 이용에 관한 경관지
 - ④ 양식·해태 등 어로에 관한 경관지
 - ⑤ 수로·항구 등 물의 이용에 관한 경관지
 - ⑥ 광산·채석장·공장군 등의 발굴·제조에 관한 경관지
 - ⑦ 도·광장 등의 유통·왕래에 관한 경관지
 - ⑧ 원근·옥부림 등의 주거에 관한 경관지
2. 전항 각호에 예시된 것이 복합된 경관지 중 우리 국민의 기반적인 생활 또는 생업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형적인 것 또는 독특한 것

있다. 이러한 정의가 새로이 추가된 것은 1975년의 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5장의 2(현재 제9장)로서 1장 추가되어 규정하였고, 그 보호제도의 장명에는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의 보호제도로 창설되었다. 즉 지구의 보호제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서처럼 ‘전통적건조물군 및 이것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정촌이 정하는 지구’이다. 지구의 결정은 시정촌의 도시계획 또는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7.3.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의 선정

법 제144조 제1항은 ‘문부과학대신은 시정촌의 신청에 기하여,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국에 있어서 그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을 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로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신청에 관계된 시정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우선 지역주민 및 시정촌의 가치판단에 따라 지방의 법적 결정으로서 정하여지는 것이다. 국가는 그 중에서 가치가 특히 높은 것을 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로서 선정하는 것이며, 이 선정에 기하여 필요한 원조를 행한다 라는 제도의 구조이다. 국가의 선정기준은 ‘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 선정기준’(1975년 문부성 고시 제157호)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⁴²⁾

42) 그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 ① 전통적건조물군이 전제로서 의장적으로 우수한 것
- ② 전통적건조물군 및 지할이 구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 ③ 전통적건조물군 및 그 주위의 환경이 지역적인 특색을 현저히 나타내는 것

8. 문화재보존기술의 보호와 문화재의 연구체제

8.1. 문화재보존기술

8.1.1. 보존기술

문화재로서의 미술공예품이나 건조물의 대부분은 예로부터 전래한 것이며, 그 보존이나 수리는 주로 전통적인 기술, 기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적 처리방법을 이용한 보존이나 수리가 행하여지고 또한 기념물이나 매장문화재의 출토품의 보존이나 수리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분석이나 보존처리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문화재의 보존기술에는 전통적 기술과 과학적 기술이 병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문화재보존기술의 상황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그 기술자가 감소하고 후계자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바, 1975년 법 개정에서 제5장의 3(현재 제10장)을 신설하여 문화재의 보존기술의 보호의 장을 두었다. 즉 국가에 의한 선정보존기술의 선정과 보지자 또는 보존단체의 인정, 선정보존기술의 보존을 위한 조치, 원조 등이 제도화되었다.

8.1.2. 보존기술의 선정과 보지자 등의 인정

법 제147조 제1항은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불가결한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으로 보존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보존기술로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정보존기술의 보지자 또는 보존단체(선정보존기술을 보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로서 제3항에서 하나의 선정보존기술에 대한 전항의 인정은 보지자와 보존단체를 일체로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지단체의 인정제도도 1975년의 법개정으로 신설된 것이지만, 그 보지단체는 무형의 재능을 체현하는 자로서 자연인의 집합체로서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에 한정된 것임에 대하여, 선정보존 기술의 보존단체는 기술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성질상 재단에 포함되는 것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8.2. 문화재의 연구체제

1952년 동경국립문화재 연구소(현 동경문화재연구소)에 보존과학부가 설치되고, 물리·화학·생물의 3연구소에서 문화재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1973년에는 동연구소에 복수기술부가 설치되어 문화재의 보존복구에 관한 조사연구체제가 정비되었다. 또한 나라 문화재연구소에서도 유적, 유물의 조사나 출토유물의 조사보존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과학적인 조사연구 방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자외선·적외선·X선 등의 광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안료의 분석이나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묵서나 조각의 내부구조 등을 조사연구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처리와 관련하여서도 전통적인 재료와 전통적인 기술, 방법에 의한 보존, 수리가 중심이 되지만 근대 과학적인 보존방법도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재 중 회화, 서적, 고문서 등의 수리재료로고 과학적인 처리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V. 결어

일본의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법령의 내

용과 운용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문화재보호제도는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폭넓게 보호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문화재의 보존 기술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법체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사회구조나 국민의식 등을 둘러싼 사회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 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정세를 반영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2004년에 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04년의 개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 ‘문화적 경관’이나 생활이나 생산에 관한 용구, 용품 등의 제작기술 등을 지역에서 전승시키는 ‘민속기술’을 새로이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이외의 유형의 문화재에 대하여도 등록 제도를 확충하여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적 경관을 문화재의 정의에 추가하였지만, 이는 1975년 법 개정시 전통적건조물군이 문화재의 정의에 추가된 이래 30여년만의 추가라 할 것이다. 2004년 개정으로 새로이 보호대상으로 된 문화재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며, 일본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를 이루는 것들로 일본의 사회·산업 구조의 변화나 국민생활·의식의 변화에 의해 그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들이다.

그리고 일본은 2004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연대·협력을 통하여 문화재를 국민공통의 재산으로서 차세대에 계승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법개정을 주시하면서 우리 문화재보호 또한 좀 더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하리라 본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역시 문화재보호를 포함한 문화정책 및 그 평가에 관한 사안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 역시 단순히 문화재보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을 정비하여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각종 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원조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에의 참여와 향수기회를 확충하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노력하고 문화의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09년 5월 27일, 심사일 2009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 2009년 7월 14일)

주제어 : 문화재보호, 일본문화재보호법, 문화정책, 문화행사, 국제문화교류

참고문헌

- 根木昭, 文化政策の法的基盤, 水曜社, 2003.
- 根木昭, 日本の文化政策-文化政策の構築に向けて-, 勁草 書房, 2001.
- 文化財保護法研究會, 文化財保護法, ぎょうせい, 2006.
- 後藤和子, 文化政策學, 有斐閣, 2007.
- 後藤和子, 藝術文化の公共政策, 勁草 書房, 2004.
- 中川幾郎, 分權時代の自治文化政策, 勁草 書房, 2002.
- 中村賢二郎, 文化財保護制度の解説, ぎょうせい, 2007.
- 地方史研究協議會, 21世紀の文化政策, 名著出版, 2001.

[Abstract]

A Study of the Japanes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s

Kyo-Sik Jang*

This paper investigates Japan's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s and related information about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 Japanes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hich comprehensively protect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property conservation technology as well, has been highly praised internationally. However, Japan's social situation including the social structure and consciousness levels has been rapidly changing. It therefore seems necessary to take proper action in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The Japanes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revised in 2004 as a part of the change has significant meaning for us.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law, Japan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 hand over its valuable cultural properties to the next generation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ultural property owners.

Considering Japan's recent revision in laws, Korea also needs to take

*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an active and practical action for protection of its cultural properti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upport continued research activities for the systematic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se days, cultural policies including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evaluation have become important in Japan. Korea also needs to improve the cultural infrastructure to meet people's cultural needs and demands instead of focusing on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only. Furthermore, the encouragement of people t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is necessary through promoting various art and cultural events. At the same time, continued efforts to protect and properly use cultural properties and promot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re also needed.

Key Words :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e Japanes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cultural policies, cultural event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